

집중수업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6.03.01.

1. 근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제28조의 6 ②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23조 ④

2. 정의

집중수업이라 하면 학칙 제28조의 6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스쿨별 집중식 수업, 블록식 수업 등의 단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수업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3. 목적

집중수업은 스쿨별 교육목표와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업형태로 학습능력 및 교육 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운영계획 수립

가. 집중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의거 교과목의 목적과 실행의 단계를 잘 파악하여 교육과정 편성시 집중(블록)수업 여부를 결정한다.

나. 집중수업을 결정할 때는 과목당 집중수업기간과 시수를 결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다.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확정된 교육과정표와 교수요목에는 과목별 집중(블록)수업여부와 수업주수, 시수를 표시한다.

라. 집중수업과목은 사전 수강신청자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마. 집중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스쿨에서는 교강사회의, 학사설명회 등을 통해 집중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바. 집중수업의 강의계획서에는 주수에 해당되는 강의내용이 주차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사.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스쿨 및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5. 기타

가. 수업주수에 따른 수업평가, 강사료 지급일 및 방법 등의 행정사항은 대학의 지침을 따르나 필요시 각 스쿨에서 별도 진행할 수 있다.

나. 단기간 집중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사위촉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진행한다.

다. 집중수업에 따라 결보강계획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학사일정에 따른 수업대체일(지정일)과 다르게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위 지침 이전의 집중수업운영은 본 지침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본다.